

제정 : 2021.01.04.

일부개정 : 2021.05.27.

감사위원회 규정

2021.05.27



감사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 정의)

- ① 이 규정에서 '내부통제'라 함은 회사 운영 활동의 실효성과 지속성, 재무 보고의 정확성과 신뢰성, 리스크관리의 적정성과 적시성, 윤리강령의 준수·부정과 비리의 예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지속적으로 지켜야 할 모든 제도 및 절차를 통제하는 활동을 말한다.
- ② 이 규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함은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서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경영진 등 조직 구성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 ③ 이 규정에서 '내부통제부서'라 함은 회사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결과 보고 등 내부감사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장 감사위원회 구성, 선임 및 자격 요건

제4조 (감사위원회 구성)

-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② 감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제5조 (감사위원회 위원장)

- ① 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위원회 구성 후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을 통하여 선출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감사위원 선임)

- ①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위원이 되는 사내이사 후보는 이사회에서 각각 선정하며,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에서 이들 위원의 후보 추천 안건을 의결한다.

제7조 (감사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존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제8조 (감사위원회 결원 시 충원)

위원인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3인 이상의 위원 중 사외이사의 수가 3분의 2에 미달 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감사위원 자격)

위원은 회사와 독립적인 지위에 있어야 하며, 회사의 이사 및 주요 주주와 혈연 등 특수한 관계를 갖지 않아야 한다.

제10조 (감사위원회 규정)

- ① 위원회는 감사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매년 위원회 규정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 ②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제3장 감사위원회 운영

제11조 (감사록 작성)

-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 개최)

-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 ② 정기위원회는 대면 회의로 매 분기 1회씩 개최한다.
-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13조 (회의 참석 대상)

- ① 정기위원회는 위원, 회사 경영진 및 외부감사인이 회의에 참석하여 내부감사 실적 및 외부감사 결과 등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고 대면 회의 개최 횟수, 참석자 인적 사항, 주요 발언 내용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 경영진, 재무 담당임원, 내부통제 조직의 장 등에게 위원회 회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감사위원회 소집)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15조 (의사록 작성)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6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7조 (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나.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의견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가. 이사회에 대한 보고
나.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다. 이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
라.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마.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바.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3. 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업무·재산에 대한 조사

나. 자회사의 업무·재산에 대한 조사

다. 이사의 보고 수령

라.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 시 소 제기 결정 여부

마. 외부감사인의 선임, 변경 및 해임에 대한 승인

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아. 감사계획 및 결과

자.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차.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카. 정보관리(IT 감사 포함)의 평가

타.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파.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하. 내부감사 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4. 부정행위에 관한 사항

가. 특별감사에 대한 착수 청구

나.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다. 외부 전문가의 선임

제4장 감사위원회 역할과 책임

제18조 (직무와 권한)

- ①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 상태 조사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재산 상태에 관한 조사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5.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 진술
 6. 이사의 보고 수령
 7. 이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
 8.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9. 회계 부정에 대한 내부 신고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 내용 확인 및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 유지와 신고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10.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11. 내부회계관리 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 · 감독 및 운영실태 평가
 12. 외부감사인의 선임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 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2. 회사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 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 ④ 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전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자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본 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2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⑦ 위원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회사측에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부정행위)

위원회는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인식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0조 (내부신고)

- ① 위원회는 회사의 직원들이 재무보고나 기타 문제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관하여, 불이익 처우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내부통제제도)

- ① 위원회는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업 자산의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의 존재 여부 및 동 체계의 실효성을 확인해야 하고, 내부 조직단위간의 적절한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 미비점이나 취약점을 시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 (내부통제부서)

-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거나 회사의 내부감사 부서를 활용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전문인력의 임용 및 운영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장 외부감사인과의 관계

제23조 (외부감사인 선임)

- ①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해당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②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연속하는 매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을 동일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전 외부감사인 후보자로부터 외부감사 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외부감사인 후보자의 독립성과 전문성, 예상 감사 시간, 감사 보수, 감사 계획, 징계 여부 등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외부감사인 후보를 평가하기 위하여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선임 평가 결과를 문서화하여 관리한다.

제24조 (외부감사 실시)

-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 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하고, 최소한 분기에 1회 이상 외부감사인을 만나서 외부감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논의 결과를 내부감사 업무에 반영할 것을 권고한다.
- ②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감사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 또는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 등을 발견하여 보고받은 내역에 대하여 필요 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5조 (외부감사 종료)

- ① 위원회는 감사 계약대로 외부감사가 수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의 계약 체결 시의 계약조건과 외부감사 실시 내용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외부감사가 종료된 후에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평가하여 차기 연도의 감사계획 수립과 외부감사인 선임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26조 (외부감사인 변경)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 ①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해산하는 경우(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 ②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이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③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외부감사인인 감사반의 구성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④ 기타 외부감사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7조 (외부감사인 해임)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해임할 수 있다.

- ①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② 외부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③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 ④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규정된 외부감사인 해임 사유가 발생된 경우

제28조 (전기 외부감사인 의견진술권)

- ① 위원회는 직전 사업연도에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행한 외부감사인(이하 "전기 외부감사인"이라 한다) 외의 다른 외부감사인의 선임을 승인하거나 제27조에 의하여 외부감사인 해임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 외부감사인 및 해임되는 외부감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전기 외부감사인 또는 해임되는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원회에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 외부감사인 또는 해임되는 외부감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진술한 의견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제29조 (의사소통)

- ① 위원회는 최소한 매년 1회 이상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 ③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외부감사인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회사 재무제표의 정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회사와의 관계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